

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13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일

발 의 자 : 최훈중 의원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(안)」 개정(2025. 1.)에 따라 「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」을 전부개정하여 예산편성·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심사위원회의 설치(안 제4조)
- 다.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(안 제5조)
- 라. 지역주민의 의견수렴(안 제6조)
- 마.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(안 제7조)
- 바.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(안 제11조)
- 사.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(안 제12조)
- 아. 예산 편성·집행(안 제13조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,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출장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옴.
-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사전 심사 강화, 주민 의견수렴, 결과보고 및 공개 의무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, 입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,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(안 제5조, 제6조) 의회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 기대.

다. 법적 타당성

- 소관 사무 원칙: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(의회규칙)에 따라 지방의회는 내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.
- 법령 범위 준수: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,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취지에 부합함.
- 체계 정합성: 총칙, 본칙(심사위원회 설치, 계획 수립 및 공개, 사후 관리 등), 부칙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, 조문 간의 내용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

참고자료

※개정안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절차 강화

계획서 작성 → (출국 45일 전) 누리집 사전 공개 → (10일 이상) 주민 의견수렴 → (출국 30일 전) 심사위원회 제출 및 심사(재적 과반 출석, 출석 2/3 찬성) → 의결 후 3일 내 결과 공개 → 공무국외출장 수행 → (귀국 15일 내) 결과보고서 제출 → (60일 내) 심사위 심의 및 상임위, 본회의 보고 → 결과보고서 공개